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진실규명결정사건 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39호)

2026.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총괄 검토의견	3
1. 제정안의 의의	3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8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1
1. 제명, 목적	11
2. 정의	12
3.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원칙	16
4. 보상금	19
5.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결정 등	21
6.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조세 면제	23
7. 결정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25
8. 보상금의 환수	28
9.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비밀준수 의무 등	30
10.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3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4. 2.
3. 회 부 일 : 2026. 4.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고,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사 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규명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보상이 병행되어야 하나, ‘과거사정리법’은 보상의 원칙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범위·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에 위임하고 있어 이를 위한 개별 입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여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보상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심의·결정하고자 함(안 제3조).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에는 조세를 면제함(안 제12조).

Ⅲ. 총괄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의 제정을 통해 탄생,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등을 통해 관련 피해자 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있음.

2025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활동결과), 2025년 11월 27일 결과보고서 제출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하였으며, 청산기한인 2026년 2월 26일을 기점으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현재 활동중에 있음.

그런데,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함.

또한 국가가 아닌 외국인,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의 경우 국가배상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들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이 법 내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보상 관련 사항은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하였음.¹⁾²⁾

1) 제429회(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2025.11.20.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현재 진실규명 결정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배·보상법을 현행법 안에 세부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입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이게 포괄적 배·보상법이기에 때문에 다양한 피해자 유형별로 각각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운영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준비가 필요해서 짧은 기간 안에 이 법에 방대한 내용들을 다 정리하는 것은 자칫 3기 위원회의 설립이 지연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기에서는 현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과거사정리법에 국가의 입법 의무를 명시하는 것도 일정한 진전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배·보상법의 세부 내용은 3기 위원회가 설립되면 가장 신속한 과제로서 별도 법률로 두건 또는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다 충실하게 해서 반영하는 신속하게 입법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생 위원 국가의 입법 의무를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만약에 3기 진화위가 출범되면 이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언제쯤 마련될 수 있을까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송상교 지금 현재 법안의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들이 내신 안에 나와 있습니다, 정춘생 의원님도 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무적인 준비와 관계부처에서의 재정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예컨대 저는 3기 위원회가 출범한 후 한 1~2년 내에 이것은 입법을 하자라고 하는 합의들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입니다.

...

○이광희 위원 저도 법적 근거 마련하고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따로 법률로 정하는 이런 게 낫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어쨌든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이고 그 피해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걸 세부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진화위법에 규정해 버리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입법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되 보상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춘생 위원님, 동의해 주십니까?

○정춘생 위원 예.

- 2) 「과거사정리법」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과거사 피해에 대한 온전한 회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봄.

또한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앞서 검토한 것처럼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외국인 또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에 대하여도 보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현재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등 사건의 피해자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 법령과 이에 근거한 과거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들과의 업무 조정 등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배·보상 위원회를 즉시 신설하는 경우 업무 중복으로 인한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고, 각 사건·위원회 간 보상 격차에 따른 형평성 시비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제정안의 입법 이전 각 개별 과거사위원회와의 체계 정비 및 통합 조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개별 과거사 관련 법령들의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가 과거사 문제해결 통합·조정 로드맵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역 결과를 참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과거사 문제해결 관련 연구용역 개요 》

- 용역명: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해결 로드맵 연구
- 용역비: 6,000만원
- 용역기간: 2026년 5월~9월 예정
- 수행기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한편, 제정안에 따라 보상금등이 지급되는 경우 막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³⁾ 재정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2026.2.5.시행)된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과거사 문제의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등에게 배·보상을 추진하려는 입법 취지는 존중하나,

현재 개별 과거사의 배·보상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예정인 개별 과거사위원회와의 체계 정비 없이 진실규명 사건에 대한 배·보상을 위한 별도 위원회를 바로 신설할 경우, 위원회 간 기능중복 등 비효율

3)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결정에 따른 보상 규정 도입 시 보상비용은 최소 1조 462억원에서 최대 1조 7,163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음.

발생이 발생할 수 있고, 배·보상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생산적 논의보다 사건별 형평성 논쟁이 부각될 우려될 수 있으므로,

현재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 체계적인 과거사 정리 로드맵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를 정리하여, 배·보상 기준과 금액 등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제도를 과거사 전반에 걸쳐 일괄 정비(입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기획예산처는 과거사에 대한 국가보상 여부·금액 등은 사안별로 사건의 성격, 국가 가담 정도, 재정여건 및 사건 간 형평성, 사회적 합의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바, 동 법안에 따른 기계적 산출방식 적용시 보상기준 및 금액 등의 부적합성, 사건 간 형평성 등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될 수 있고,

현재 개별 과거사 법률에 근거한 과거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배·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과 법체계의 중복성으로 인한 행정비용 가중이 우려되므로,

피해 규모, 대상자 범위, 기존 지원제도와 중복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재정영향 분석 후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법률안의 체계 및 주요 내용

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칙 21개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정안의 체계 》

구분	조문		주요 내용
본문	제1조	목적	- 진화위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 등을 하여야 함
	제2조	정의	-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유족에 대하여 정의
	제3조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의무 설치
	제4조	보상 원칙	-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
	제5조	보상금	-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산출한 보상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 -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권 공유
	제6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 보상금 지급신청은 「과거사정리법」 제3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 종전 규정으로 이 법 시행 전 결정을 받은 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가능
	제7조	보상금의 결정	-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행불자는 120일 이내)
	제8조	결정서정본 송달	-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 *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 준용

구분	조문		주요 내용
	제9조	재심의	- 이의가 있는 피해자와 유족은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신청 - 보상심의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결정
	제10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 보상금 지급신청 시 결정 동의서를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
	제11조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제공·압류 금지
	제12조	조세 면제	- 보상금에 대하여 국세·지방세 면제
	제13조	결정전치주의	- 보상금 지급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 제기 가능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지자체로부터 배·보상을 받은 경우 차감 지급 - 보상금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 시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성립(정신적 피해 예외)
	제15조	보상금의 환수	- 국가는 일정한 경우 기 지급한 보상금 전부 또는 일부 환수 가능
	제16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 결정을 위해 증언,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가능
	제17조	비밀준수 의무	-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직원 등은 비밀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타인에 제공·누설해서는 안됨
	제18조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 누구든지 피해자·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 목적의 단체 조직 또는 단체·개인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됨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원 아닌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과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부칙	-	-	공포 후 3개월 경과일부터 법률 시행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둘째,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셋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넷째,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

이하부터는 조문별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주요 조문별 검토의견

1. 제명, 목적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 등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제명을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고, 「과거사정리법」 제2조4)에 따른 진실규명 해당 사건의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이들

- 4) 「과거사정리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 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6.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운영되었던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7.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 ② 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 생활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이 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있음.

다만, 이 법의 입법목적이 「과거사정리법」 제50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사건으로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므로,⁵⁾ 안 제1조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을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⁶⁾

2.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조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을 말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3조에 따른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다.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5) 「과거사정리법」 제50조(피해에 대한 배상·보상 및 명예회복) ① 국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의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및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후술할 제2조의 정의규정에서도 피해자를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한 사망·행방불명자·상이자 등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라.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

3. “유족”이란 진실규명결정 사건으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3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를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한 사망자·행방불명자·상이자 등으로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이 법이 구제하려는 피해자와 유족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보상금의 지급 등이 필요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임.

다만, 안 제2조제2호라목이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로 인권침해사실이 확인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에서 희생자 등을 사망한 자와 행방불명자, 상이를 입은 자 등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인권침해를 입은 자는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희생자 등의 범위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여수·순천 10·19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受刑者)로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희생자"란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수형인(受刑人)으로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이를 피해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를 입은 자’라는 표현의 모호성으로 인한 대상의 광범위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할 것임.

한편, 제5조의 보상금 조항에 따르면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와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만 규정되어 있을 뿐, 인권침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음.

한편, 유족의 범위와 관련하여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민법」상 상속순위의 방계혈족보다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나,⁷⁾ 이는 일반적인 상속이 아닌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목적에서 피해자와의 관련성을 고려한 제한규정으로 보이고, 관련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봄.

《 유족 중 방계혈족의 범위 제한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희생자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존속·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하고,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7)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3.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보상 원칙

제3조(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상 원칙)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안 제2조가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또한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과거사정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2210367)	제34조의2(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중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에 대하여는 유사 입법례가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위원회의 구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 에 관한 법률	제3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삼청교육피해 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3조(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① 피해자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한편,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정당 보상의 원칙을 규정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유사한 보상 원칙을 두고 있는 유사 입법례가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보상 원칙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상의 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4. 보상금

제5조(보상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정안은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 및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음.

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보상금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여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검토한 것처럼 진실규명결정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보상금 규정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用)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애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5. 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결정 등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의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8조(결정서정본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은 제8조에 따라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0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8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보상금의 지급신청과 그 결정, 결정서정본 송달, 재심의 및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해당 조항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등	제8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와 결정) 보상심의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결정서 송달)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12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또한 안 제6조제2항에서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보상금의 지급신청 및 그 결정 등에 대하여는 「과거사정리법」 제3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하도록 하면서, 단서 규정을 통해 이 법 시행 전에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시점에 따라 구제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진실규명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만 보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와 진실규명결정서에 희생자 또는 피해자로 명시되었으나 신청인 및 조사대상자·참고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진실규명결정을 송달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⁸⁾

6.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조세 면제

제11조(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2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이와 관련하여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자 또는 유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6조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등의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보호하는 한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피해자 등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지급받은 피해자, 유족의 생활안정에도모하려는 취지가 인정되고, 유사 입법례도 있어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및 조세 면제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조세 면제	제13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4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조세 면제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한 법률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⁹⁾ 이를 개별법률에 규정하더라도 실제 조세면제가 이루어지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므로 해당 조문의 개정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9)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이하 생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이하생략)

7. 결정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13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의 경우에는 120일)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正本(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정신적

피해를 제외한 진실규명결정 사건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고 있음.

해당 조항들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며,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결정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결정전치주의,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15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棄却)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사망 시까지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그 밖의 혜택이 부여되는바,¹⁰⁾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들에게 보상금을 차감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유공자 등의 등록 시점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보훈급여등이 계속 지급됨에 따른 이중보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유공자·보훈대상자 보상대상 미포함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유공자·보훈대상자 보상대상 미포함 규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상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⑤ 보상금은 월액(月額)으로 하고,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보훈급여금의 지급) ① 보훈급여금은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훈급여금을 받을 사람이 본인 명의로 보훈급여금만 입금될 수 있는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예금계좌로 보훈급여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8. 보상금의 환수

제15조(보상금의 환수) ① 국가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 액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
3.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생존하고 있거나 진실규명결정 사건과 관련 없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정안은 보상금의 부정수급 또는 초과지급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강제징수의 방법을 통해 환수하려는 것으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유사 입법례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보상금의 환수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3.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등을 지급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는 위로금등을 전부 회수하도록 단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임.

《 거짓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 시 전부 환수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내용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등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u>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른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9.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비밀준수 의무 등

제16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결정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준수 의무)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정안은 보상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에 대한 협조의무,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비밀준수 의무,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지급결정을 위한 사실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과거사 피해자 및 유족의 개인정보 등 민감사항이 유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일을 방지하며,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영리목적 단체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비밀준수 의무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8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을 위하여 관련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상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비밀준수 의무	제57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자문기구 또는 숙의공론화장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으로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조직의 제한	제60조(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안 제16조제2항이 타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보상심의위원회의 요청을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계 기관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요청사항을 처리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10.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제21조(과태료)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경우에도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관련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이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가능하게 위한 규정들로 보이며,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였을 때 법체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임.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벌칙, 과태료 등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벌칙	제6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 2.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 3.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감정한 증인 또는 감정인 ②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의 명예를 해할 목적 또는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22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와 관련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 5.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서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한 감정인 6.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7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2. 제58조를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한 자 ④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희생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원회의 진실규명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술(진술서 제출을 포함한 다)을 한 참고인이나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또는 물건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8항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의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 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5. 제59조를 위반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다만, 안 제20조제2항제1호가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18조는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제17조를 위반하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0조제2항제2호가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21조는 “제20조를 위반하여” 보상심의위원회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안 제19조 및 제20조는 각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와 벌칙 조항이므로, 입법례를 참고하여 관련 규정을 도입한 후 이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의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격사칭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 금지 관련 유사 입법례 》

구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자격사칭 금지	제58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 소속 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또는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문 의 처

02)6788-5343